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6. 김종복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종복 의원)

가. 제안이유

- 용역 보고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최종보고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화성시 용역 수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용역 보고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 보안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용역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그 밖에 학술용역에 대한 유사성 검증 규정과 용역결과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 효율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술용역표절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용역보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의2)
- 용역결과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용역 보고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화성시 용역 수행의 투명성 제고와 비공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용역결과 공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 효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1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7.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책기획과 유운호)

가. 출연배경

- 꾸준한 도시성장에 대응하여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화성시민의 희망찬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 미래비전을 제시할 전담 Think-Tank 필요
-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정부, 경기도 등 상위기관 주요 정책 및 상위계획 수립·대응과 국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리 시 미래비전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 마련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필요한 운영 경비를 출연하고자 함

나. 출연목적

- 관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우리 시 특수한 지역 여건 및 현안, 지역 문제 등의 진단과 예측 등 수요자 중심 정책연구로 도시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과제 도출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충실한 연구수행
- 시정혁신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합리적·전문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 행정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자문 등 협력적 소통 관계 구축

다. 주요내용

가. 주요 성과 목표(안)

구 분	주요 성과별 목표		비고
연구성과 발간	기본연구 (1~3개월)	10건	연구책임 기준 박사 1인당 4건 이상 연구수행
	전략연구 (6~10개월)	10건	
	정책연구 (3~6개월)	20건	
	현안연구	56건 (이슈리포트 24건, 화성insight 12건, 연구성과 브리프 20건)	
정책 공론의 장 마련 (포럼, 세미나 등)	HI Solution 포럼	연간 2회(반기별)	
	전문가 세미나	연간 4회(분기별)	
	연구성과보고회	연간 40건 (기본, 전략, 정책연구보고서 기준)	
	시민토론회	연간2회(비정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과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사회적경제과 이영혜)

가.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2023. 12. 31.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5조제2항 삭제).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의 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칙 [금고의 수]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간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라는 조문을 적용하고자 하며,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으므로, 조례에 의무적으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는 조문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 조례 조항에 기재된 「화성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후 제정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의무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존속기한 연장(안 제15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6. 김영수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ESG의 각 분야별 균형과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ESG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ESG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ESG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관내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ESG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재산관리과 김향겸)

가. 제안이유

○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변경)

- 우수한 생태계가 조성된 비봉습지의 생물자원을 보존하여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 화성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건립하여 화성시 미술산업 육성 및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며, 화성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 화성 공룡(자연) 과학센터 건립(변경)

- 중생대 공룡알 화석이 출토된 우리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에 공룡자연과학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에게 지역의 자연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공유재산 처분(건물매실)

- 기존 방문자센터를 철거하고 통합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받은 최대한으로 건립하는 방안에 적정하다는 결론으로 방문자센터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함.

○ 향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재한 향남읍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활동 증진을 통한 건전한 육성 기반을 마련

○ 동탄2(주14), 동탄2(주21), 동탄2(주63), 동탄2(주64), 태안3(주6), 송산그린시티(주1), 남양뉴타운(주12), 비봉지구(주1), 비봉지구(주4)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재산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수량 (면적)				
계	토지 건물 기타		62,803.2 17,368 -	27,588,342 86,208,000 -			
1	토지 건물 기타	- 새솔동 168번지 -	- 700 -	- 3,000,000 -	- 2024 -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	수질관리과
2	토지 건물 기타	오산동 1010번지 오산동 1010번지 -	8,112 6,025 -	14,277,120 26,928,000 -	2024 2028 -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문화예술과
3	토지 건물 기타	송산면 고정리 일원 송산면 고정리 일원 -	42,760 6,835 -	(미정) 38,130,000 -	2026 2026 -	화성시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문화예술과
4	토지 건물 기타	- 향남읍 하갈리 1508번지 일원 -	- 3,808 -	- 18,150,000 -	- 2027 -	향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청년청소년 정책과
5	토지 건물 기타	산척동 833-8번지 - -	1,034.1 - -	1,257,466 - -	2024 - -	동탄2(주14)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교통지도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재산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수량 (면적)				
6	토지	산척동 803번지	1,869.7	2,088,455	2024	동탄2(주21)	교통지도과
	건물	-	-	-	-	공영주차장	
	기타	-	-	-	-	조성공사	
7	토지	장지동 942-2번지	1,218.3	1,438,812	2024	동탄2(주63)	교통지도과
	건물	-	-	-	-	공영주차장	
	기타	-	-	-	-	조성공사	
8	토지	장지동 932-5번지	1,323.6	1,563,172	2024	동탄2(주64)	교통지도과
	건물	-	-	-	-	공영주차장	
	기타	-	-	-	-	조성공사	
9	토지	안녕동 269-2번지	1,423	3,753,874	2024	태안3(주6)	교통지도과
	건물	-	-	-	-	공영주차장	
	기타	-	-	-	-	조성공사	
10	토지	새솔동 142번지	1,122.6	740,579	2024	송산그린시티(주1)	교통지도과
	건물	-	-	-	-	공영주차장	
	기타	-	-	-	-	조성공사	
11	토지	남양읍 북양리 691-8번지	1,022.9	1,013,898	2024	남양뉴타운(주12)	교통지도과
	건물	-	-	-	-	공영주차장	
	기타	-	-	-	-	조성공사	
12	토지	비봉면 삼화리 383-69번지	1,668	1,044,669	2024	비봉지구(주1)	교통지도과
	건물	-	-	-	-	공영주차장	
	기타	-	-	-	-	조성공사	
13	토지	비봉면 구포리 849-4번지	1,249	410,297	2024	비봉지구(주4)	교통지도과
	건물	-	-	-	-	공영주차장	
	기타	-	-	-	-	조성공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변경)
 - 우수 생태계 보전과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 됨.
-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화성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화성시의 문화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 됨.
- [일괄] 화성 공룡(자연) 과학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처분(건물 멸실)
 - 공룡을 주제로 한 자연과학 체험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우리시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자연과학 체험시설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 됨.
- 향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향한 교류 및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 됨.
- [일괄] 동탄2(주14), 동탄2(주21), 동탄2(주63), 동탄2(주64), 태안3(주6), 송산그린시티(주1), 남양뉴타운(주12), 비봉지구(주1), 비봉지구(주4)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 등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6. 오문섭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오문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소속 공무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등 각종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화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행정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강화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2항~제3항)
-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자치행정과 우정숙)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회 위탁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도모하며,
-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량강화를 통한 화성형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자 함.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 요청)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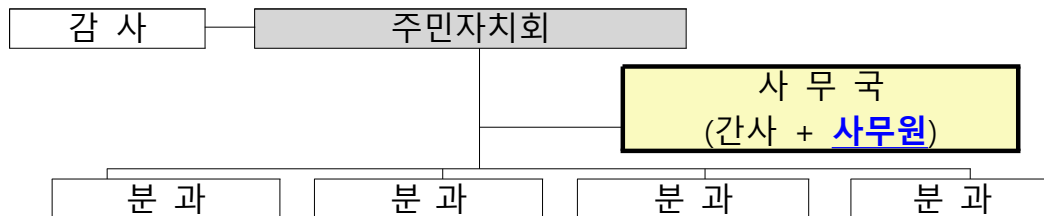
1) 위탁계획

- 위탁기간: 2024. 1. ~ 2025. 12. (2년)
- 위탁대상: 주민자치회 29개소 (전면실시)
- 위탁방법: 읍면동장 ↔ 주민자치회 위·수탁 협약 체결 (수의계약)
- 위탁사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 프로그램 운영 관리(신설·변경·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위촉·해임 등)
 - 수강료 관리(징수 및 환불)

-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추진 지원 등)

※ 시설 유지보수: 읍·면·동에서 관리

2) 사 무 원: 1명 이상 [주민자치회 직접 채용]



※ 향후 추진계획

- 2023. 10.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3. 10. : 민간위탁 관련 교육 및 질의응답 진행
- 2023. 11. : 민간위탁 협약체결 (읍면동 ↔ 주민자치회)
- 2023. 11. ~ 12. : 위탁사무 사무원 채용
- 2024. 1. ~ : 주민자치센터 위탁 운영

※ 소요예산: 2,581,000천원(민간위탁금, 사비100%)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

- 읍면동별 예산액: 89,000천원 (직원 인건비 + 프로그램 강사비 + 센터 운영비)
-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비교 (1개소)

<현행>		<민간위탁>
89,137천원		89,000천원
주민자치지원관 인건비 : 연봉 40,537천원 + α	⇒	사무국 직원 인건비 : 48,000천원 이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 40,600천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 41,000천원
자원봉사자 실비 : 8,000천원		자원봉사자 실비 : 폐지

※ 수강료 수입은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을 위한 자체 운영비로 집행하며,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범위 내 집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자치행정과 우정숙)

가. 제안이유

- 화성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5조제3항)
-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7조제2항)
-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 구성(기금운용 전문가 자격 추가) 변경(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조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정비하여 전문성 제고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세정과 우정수)

가. 제안이유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으로 우선 선포 (2023. 7. 19.)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별제도와과-1920(2023. 7. 20.)] 통보에 따라,

○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의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중 개인사업자), 2023년 자동차세(소유분)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 세목별 감면내역

(1)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2)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3)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4)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해당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세정과 우정수)

가.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화성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4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 운영 도모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향후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징수와 오추섭)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통보한 10개 규제혁신 개선과제 중 하나로, 제증명 등 수수료 반환요건을 확대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라도 과오납의 원인이 시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반환 사유인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청변경·취소 외 지자체의 귀책사유 발생 시 기 납부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불편을 초래한 규제혁신 개선과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이 기대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